

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6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3.

발 의 자 : 김성원 · 김은혜 · 이현승
김선교 · 고동진 · 박충권
김정재 · 엄태영 · 김승수
한지아 · 주진우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병대를 해군에 소속된 부대로 규정하고 해군과 함께 상륙작전을 주된 임무로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상륙작전 중심의 제한된 역할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해병대가 타군과 구별되는 특수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수행해 온 고유 임무 전반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해병대는 상륙작전뿐 아니라 신속기동 전력으로서의 전개 능력, 합동 · 연합작전 수행, 도서 · 연안 방어 및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 등 고유한 임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· 발전시켜 옴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 특성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작전계획 수립, 교육훈련 체계 정립, 전력 증강 및 준(準)4군으로의 개편에 있어 제도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발생함.

이에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해병대가 수행하는 작전과 임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준(準)4군으로서 독립적인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3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군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해병대는 상륙작전을”을 “해병대는 상륙작전, 전략도서방위작전 및 신속기동작전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각군의 주임무 등) ① (생략)	제3조(각군의 주임무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, <u>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·훈련을 한다.</u>	② ----- ----- <u>해병대는 상륙작전, 전략도서방위작전 및 신속기동작전을</u> ----- -----.
③ · ④ (생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